

VERDER GROUP의 판매 및 인도에 관한 일반약관

필수 게시: www.verder.com/generalterms

1. 적용범위

1.1 본 판매 및 인도에 관한 일반약관 (이하 "약관") 은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Verder International BV의 자회사 및 Verder Group 소속 <㈜제이씨> (이하 "공급자")의 물품 (이하 "물품") 공급 및 서비스 (이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2 본 약관을 벗어나는 상이한 사항은 계약당사자들이 서면 계약으로 합의하거나 공급자가 서면으로 상이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로써, 계약 상대방 (이하 "구매자")의 일반약관 적용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1.3 이 조건들 중 하나 이상의 사항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무효화되거나 기타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계약당사자들은 이 조건들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작성해야 한다.

2. 청약 및 합의

2.1 공급자는 청약 수락 후 달력일 기준 7 일 이내에 아무런 사유 제시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2.2 청약은 해당 청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수락되어야 한다.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청약은 달력일 기준 최대 30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청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2.3 모든 견적 및 후속 주문 및/또는 계약은 항상, 국가 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당국의 수출 허가 (즉, 승인, 일반 허가 등)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는 어떠한 배상책임이나 비용에 관한 보상 의무 없이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4 제공된 데이터 및/또는 견본은 구체적인 보장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참고용으로 간주되며, 공급자는 이와 다르게 이행할 수 있다.

2.5 공급자는 납품할 물품 및/또는 서비스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물품 및/또는 서비스의 유의미한 특징이 동일하다면 해당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인도할 권리를 가진다.

3. 가격, 대금청구, 지불조건

3.1 약정된 가격에는 항상 포장, 세금, 배송 및 수출통관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비용들은 별도로 명시된다 (이하 제반 비용 및 세금을 포함하여 "계약 대금"이라 총칭한다).

3.2 가격은 합의된 통화로 책정되며, 부가가치세, 판매세, 소비세 및/또는 기타 유사 세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3 물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 구매 또는 조달 비용의 총액이 10%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그 원인에 상관없이 (초인플레이션이나 무역 관세 부과 상황까지도 포함) 공급자는 제안 및/또는 약정된 가격을 인상할 권리를 가진다. 공급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3.4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구매자는 계약 대금을 송장 일자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송장은 배송 시 발송된다. 지불기한 준수는 계약의 핵심 요소이다.

3.5 공급자가 자신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하여 의무 이행이 지체된 경우, 공급자는 이미 이행된 활동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6 구매자가 송장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언급한 송장의 수령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제기 사유를 상세히 서술하며, 이의가 없는 금액은 전부 지불한다.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일체의 청구사항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기일 내 지불되어야 한다.

3.7 대금지불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체되는 경우, 구매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공급자는 적용 법정이자와 실제 추심비용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4. 인도

4.1 인도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인코텀즈(Incoterms) 최신판에 따른 공급자 공장 인도조건(FCA)으로 한다. 부분 배송은 허용된다.

4.2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수리, 처리 또는 가공 목적으로 여하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그 인도는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인코텀즈(Incoterms) 최신판에 따른 공급자 공장 관세지급인도 (DDP) 조건으로 한다. 보증기간 내 수리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3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팔레트 및 컨테이너를 포함한 포장재는 공급자의 자산이며, 구매자의 비용으로 공급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4.4 물품 인도/서비스 수행 즉시 구매자는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검수하고 통상의 입고검사, 품질점검 및 검사를 수행한다. 물품의 하자나 부족분에 대한 배상청구는 인도시점에 해당 부족분이나 하자를 상세히 서술한 수령증이 운송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나, 해당 부족분이나 하자에 대한 통지가 인도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7 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되지 아니한다. 앞서 언급한 사항이 없는 경우, 물품의 인도 및/또는 서비스의 수행이 본래의 온전한 조건으로 계약에 부합하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4.5 물품 인도 및/또는 서비스 수행 일자, 기한 혹은 기간은 공급자가 서면 확인을 행하고 구매자가 선불 등을 포함한 제반 약정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4.6 물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일자, 기한 또는 기간은 최선의 추정치로서 근사치에 해당할 뿐이다. 이와 같은 일자, 기한 또는 기간은 절제절명한 시한이 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한은 계약의 절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인도 지체로 인한 불이행의 경우 공급자의 배상책임은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계약대금의 최대 2.5%까지로 한정된다.

4.7 물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일자, 기한 또는 기간은 구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연장된다.

4.8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인도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면 공급자는 그에 따른 모든 후속 비용 (예컨대 보관비, 인력 동원비 등)에 대하여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급자는 내부 생산 계획에 근거하여 구매자와 함께 새로운 인도일을 결정한다. 새로 정해진 인도일이 본래의 인도일보다 2개월을 초과하면 공급자는 전체 계약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구매자는 이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5. 설치, 시운전, 서비스

5.1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에 물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물품의 설치 및 시운전이 합의되었거나,

혹은 시운전이나 설치를 포함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제 5.2 조항이 적용된다.

5.2 활동 시작 전 및 활동 수행 중:

- a) 물품과 더불어 모든 부품 및 자재에 대한 위험은, 공급자 공장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조건으로 사실적 인도가 행해진 시점 후에 구매자가 부담한다.
- b) 구매자는 설치 및 시운전이 그 어떤 추가 조달이나 설비의 필요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매자 부지에 대한 접근성을 책임진다.
- c) 공급자는 기초공사, 토목공사, 철거 및/또는 기존 장비의 해체나 제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d) 구매자는 에너지, 물, 공기, 공구, 호이스트 및 크레인 장비 등 모든 필요 소모품과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e) 구매자는 토목, 시공 및 전기 기술 활동 등 모든 준비 작업이 적시에 완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f) 공급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 3 자를 활용할 권리가 있다.
- g) 구매자는 정부당국의 준거 규정 및 안전 요구사항은 물론 기타 강제 법령이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h) 구매자는 설치 및 시운전 개시 시점과 진행 도중에 물품이 적시에 올바른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i) 구매자는 구매자의 부지 내 물품의 설치 및 시운전이 진행되는 동안, 공급자가 방해나 간섭 없이 모든 필요한 활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활동이 공급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구매자는 동원(해체) 비용을 포함한 제반 추가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합의된 약정 완료일은 연장된다.
- j) 완료는 물품이 기계적으로 완전하고 시운전이 된 경우 및/또는 서비스가 완전하게 수행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구매자는 시운전 시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검수할 권리가 있다.
- k) 완료는 완료증명서로 문서화한다. 모든 보완사항이나 의견사항은 기록되어야 한다. 구매자는 완료증명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물품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 l) 물품의 실제 작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이나 결함은 물품의 시운전 및 완료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미한 부분이나 결함은 합리적인 시일 내에 공급자가 보완한다.
- m) 공급자의 소관 및/또는 책임 범위 밖의 사유로 시운전 및/또는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이를 서면 통지한다. 이 경우, 완료는 서면 통지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소유권 및 위험 이전

6.1 제6.2조항에 따라,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인도 시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6.2 법률이 허용하는 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모든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모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구매자는 완납 전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여타의 법적 권리를 제3자에게 전매, 이전, 양도, 질권설정 또는 증여할 권리가 없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인도 후 물품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구매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3 소유권 유보 대상 물품이 다른 품목과 조립되거나 결합되어 공급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 구매자는 조립 또는 결합된 품목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물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만큼 공급자에게 양도한다.

6.4 공급자가 공동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공동소유권 가치에 상당하는 액수만큼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구매자는 해당 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한다.

6.5 상기 소유권 유보 조항이 관련 법상 유효하지 아니할 경우, 의도된 소유권 유보와 가장 유사한 담보권이 공급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본다.

6.6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대금 완납을 위한 담보로서,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소재지 및 현재 존재 여부, 향후 발생 또는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 그리고 그 부속물, 교체품 또는 개조품, 그리고 상기 물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수익금(보험금 포함)에 대한 유지권 및 담보권을 Verder에게 부여한다.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담보권은 (i) 미국의 경우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ii) 캐나다의 경우 동산담보법(Personal Property Security Act)에 따른 구매금 담보권에 해당한다. Verder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단, Verder가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Verder가 담보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작용하지는 아니한다.

7. 보증

7.1 보증 기간 (이하 “보증기간”) 은 물품의 인도 시점 혹은 서비스의 이행 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이다.

7.2 공급자는 물품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인도하며, 물품이 사용되지 않은 신품이고 미사용 상태이며, 더불어 보증기간 동안에 재료, 시공기술, 설계에 하자가 없고 계약상 사양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나아가, 공급자는 모든 서비스가 건전한 엔지니어링 관행(Sound Engineering Practice) 및 적절한 주의의무에 따라 수행됨을 보증한다. 서비스는 특정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아니한다.

7.3 보증 부인: 공급자는 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모든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기타의 모든 보증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 위한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른 일체의 보증을 부인한다.

7.4 발열체, 열소자, 세라믹, 멤브레인, 고무 및 유리 부품은 그 특성상 사용자로 인한 손상, 잘못된 취급 또는 보관으로 인한 손상에 취약하므로, 구매자가 해당 손상이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증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하의 모든 보증에서 제외된다.

7.5 공급자가 수행 또는 제공한 검수, 자문 및 유사한 서비스는 보증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하의 모든 보증에서 제외된다.

7.6 본 보증은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원인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함인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운영 및/또는 유지보수 지시사항 미준수;
- b. 정상적인 마모 및 노후;
- c. 통상의 입고 및 품질검사와 점검을 통해 발견될 수 있었던 결함;
- d. 부적절하거나 부주의한 보관, 사용 또는 취급으로 의해 초래된 물품 손상이나 악화;
- e.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
- f. 구매자 혹은 제 3 자가 의한 수리;
- g. 공급자가 공급하거나 인증하지 아니한 예비부품, 소모품 또는 자재.

7.7 소모품과 부속품은 최초 사용 후 모든 보증에서 제외된다.

7.8 공급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물품이 실제 사양에 따라 사용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서만 보증된다. 소프트웨어가 유지보수 되지 아니하였거나, 업데이트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알맞지 않는 하드웨어에 사용되거나 저장된 경우 모든 보증에서 제외된다. 결함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와 함께 협의하여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

7.9 공급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해킹, 침입 또는 제 3 자에 의한 어떠한 무단 접근에 대해 보증되지 않는다. 구매자는 이러한 해킹, 침입 또는 무단 접근으로부터 자신의 디지털 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은 계속해서 구매자에게 있음을 상호 합의하고 이해한다. 데이터 유출, 도난, 손상 및 데이터 인질화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단독 책임 및 법적 책임에 있다. 제 3 자에 의한 이러한 해킹, 침입 또는 무단 접근과 관련된 모든 묵시적 또는 법정 보증 역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제외된다.

7.10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용하거나 구매자의 운영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장비의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되는 온라인 및 실시간 기계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특정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자신의 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고장 또는 작동 불능 여부를 점검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은 계속해서 구매자에게 있음을 상호 합의하고 이해한다.

7.11 보증 기간 내에 통상적인 입고 및 품질검사, 점검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결함 발생 시, 공급자는 재량에 따라 수리나 교체 및/또는 서비스의 재수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하 “하자보수”). 이 하자보수의 의무는 유일하고 독점적이며, 모든 묵시적 보증이나 보장 및/또는 법정 보증이나 보장을 대체 및 배제함은 물론 물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불이행의 결과로 구매자에게 발생한 추가 손해 및/또는 비용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배제한다.

7.12 복구 후에는, 수리 또는 교체된 부품 혹은 재수행된 서비스에 대하여 복구일로부터 12 개월간 새로운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단, 모든 새로운 보증기간은 항상 본래의 인도일 및/또는 본래의 서비스 수행일로부터 36 개월을 최종 한도로 하며, 그 이후로는 더이상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보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7.13 결함 및/또는 보증이나 보장 불충족에 관한 모든 불만사항은 결함 발견 후 달력일 기준 14 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복구에 대한 구매자의 모든 권리 및/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결함이 기한 내 보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실된다. 준거법 상 허용되는 한, 모든 적용 시효는 배상 책임을 초래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12 개월간으로 단축된다.

7.14 물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경우 (예: 물품 설치공사), 물품에 접근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7.15 구매자가 공급된 물품 및/또는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가 아닌 경우, 물품 및/또는 서비스가 구매자의 소재지에 아님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7.16 보고된 결함에 관한 조사 후 그러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매자는 모든 조사 혹은 기타의 검사 비용을 공급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8. 해산, 유예, 종료

8.1 구매자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계약상 다른 청구권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자신의 추가 의무 이행을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동안 중단할 수 있다.

8.2 공급자가 구매자의 지불능력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지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모든 계약상 의무 이행을 연기할 권리가 있다.

8.3 일방 당사자가 관련 서면 통지를 받은 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4 구매자의 사업 중단, 법적 관리, 청산, 파산 (신청)의 경우 및/또는 구매자나 구매자의 소재 국가가 정한 제재대상 목록에 오를 경우, 공급자는 여하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의무 이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5 상기와 같이 공급자가 의무 이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구매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속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배상책임

9.1 공급자는 공급자의 계약상 의무 또는 여타의 다른 법적 요구사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초래된 구매자의 손해, 대금지급, 손실, 비용, 경비 및 배상책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9.2 준거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공급자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제기에 대한 모든 적용 법정 시효는 물품의 인도 및/또는 서비스의 수행 후 12 개월간으로 단축한다.

9.3 모든 계약, 물품 인도 및/또는 서비스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급자의 최대 배상책임은, 그것이 계약에 근거하든 불법 행위 또는 기타 다른 것 (제조물 책임으로 인한 손해 포함)에 근거하든, 공급자의 책임보험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손해액 또는 계약 금액의 100%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9.4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이익 또는 매출 손실, 계약 손실, 가동중단 비용 또는 구매자의 고객들로부터 제기되는 배상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모든 결과적, 간접적,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9.5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해당 저작물, 문서, 도면 및/또는 디자인이 구매자나 구매자를 대리한 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정해지거나 또는 자문된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그로부터 공급자를 면책한다.

9.6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데이터 유출, 데이터 도난, 데이터 손상 및/또는 데이터 인질화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초래되는 일체의 비용, 손해 및/또는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러한 데이터 유출, 데이터 도난, 데이터 훼손 및/또는 데이터 인질화가 공급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통해 구매자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제 3 자의 해킹, 침입 및/또는 무단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는 공급자를 면책하고 보호해야 한다. 구매자는 이러한 해킹, 침입 및/또는 무단 접근으로부터 자신의 디지털 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할 단독적이고 전적인 책임을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이해한다.

9.7 상기의 면책 및 책임제한은 계약에 근거하든, 불법행위 또는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르든 상관없이 적용되며, 계약상 다른 곳에 이와 상반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9.8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각각의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을 제외한 어떠한 제 3 자에게도 권리나 구제수단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9.9 상기 어떠한 배상책임의 제한 및/또는 배제는 공급자의 사기, 중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 공법 위반의 경우, 혹은 신체 상해 또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9.10 이 책임 제한은 공급자의 계약 체결 의향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로서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의도된 위험 배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면 공급자는 현재 책정된 가격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책임 제한을 바탕으로, 공급자는 개별 청구에 대한 자신의 법적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였다. 구매자는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책임이 있다.

10. 구매자의 보증

구매자는 공급자가 제공한 물품, 기술 및/또는 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혹은 그와 같은 자를 목적으로 하여, 직·간접적으로 수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고 보증한다:

-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및/또는 유엔 등)의 제재 대상 국가에 거주하는 자, 특히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 벨라루스 공화국, 러시아 연방(일시적 점유지역인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포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즉,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및/또는 유엔)에 의해 제재 대상자로 등재된 자;

다만, 해당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11. 데이터 보호

11.1 각 당사자가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데이터의 내용, 사용 및/또는 처리가 위법하지 않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장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는, EU GDPR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 나아가 각 당사자는 권한 정보의 사용, 저장 및/또는 처리가 비밀로 간주되며 비밀유지 및 법적 권한 (privilege)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준거기준에 따라 처리됨을 보장한다.

12. 불가항력

12.1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위반에 대해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2 불가항력이란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여하의 상황으로 계약의 이행을 지속적 혹은 일시적으로 저해하는 상황은 물론,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며, 전쟁 (전쟁 위험도 포함), 폭동, 파업, 직장폐쇄 및 지진, 홍수, 명명된 태풍이나 허리케인 등을 망라한 자연재해, 운송의 어려움, 화재, 테러, 팬데믹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업자의 파산 및 본건 공급자의 사업 혹은 본건 공급자의 공급업자들의 사업에 여타의 심각한 타격을 주는 상황을 의미한다.

12.3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급자는 법적 개입 없이 최대 6 개월까지 계약 이행을 연기하거나, 혹은 구매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의무 없이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13.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13.1 당사자들은 각자의 의무 이행 도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모든 인공지능(AI) 데이터, 메타데이터 및 주석 데이터, 모든 학습 파라미터, 인공지능 사용 또는 기타 수행 활동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모든 결과(생성된 모델,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파생물 포함)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여하의 모든 영업 및 기술 정보, 노하우, 예컨대 제품, 가격, 고객, 공급자들 등을 포함하나 이에만 한정되지 않는 정보 (이하 "비밀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13.2 여하의 계약 이행 중 발생하거나 및/또는 공급자에 의해 인도된 물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 예컨대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디자인권, 노하우권, 특허권, 인공지능권 및 발명, 정보, 콘텐츠 혹은 프로세스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권리 (모든 경우에 있어 등록 여부는 불문하며, 해당 권리에 대한 모든 출원권도 포함)는 공급자에게 귀속되고, 공급자의 독점적 소유 재산으로 유지되고 및/또는 그러한 독점적 소유 재산이 된다. 모든 지식재산권 및/또는 비밀정보를 내포하는 일체의 것은 공급자의 재산으로 유지되고 및/또는 그러한 재산이 되며, 공급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 복제할 수 없으며, 제 3 자에게 노출되거나 여타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고, 이는 구매자가 그러한 재산의 생성이나 제공에 대하여 여타 비용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구매자는 공급자의 최초 서면 요청이 있으면 즉시 해당 매체를 반환해야 한다.

13.3 공급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비교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인공지능 자산에 대한 독점적 소유자로 남겨나 또는 독점적 소유자가 된다:

- a) 모든 데이터, 메타데이터 및 주석 데이터;
- b) 모든 학습 파라미터;
- c) 인공지능 사용 또는 기타 수행 활동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모든 결과(생성된 모델,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파생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3.4 공급자는 구매자를 참조 사례로 활용할 권리가 있다.

13.5 만일의 경우 필요하다면, 공급자는 이에 따라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자에게 부여한다.

14. 기타

14.1 본 일반약관 및/또는 이후 체결된 계약의 조항을 공급자가 포기하더라도 이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공급자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지 아니하다. 여하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구제수단, 권한 또는 특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는든가, 혹은 그러한 행사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권리의 포기로 작용하거나,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 따른 권리, 구제수단, 권한 또는 특권의 단독 혹은 부분적 행사는 해당 권리의 추가적 행사나 다른 권리, 구제수단, 권한 또는 특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아니한다.

14.2 본 약관 및/또는 이후 체결된 계약의 특정 조항이나 규정이 특정 사법관할에서 무효 또는 불법이거나 혹은 집행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무효성, 불법성 혹은 집행 불가능성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이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러한 조항이나 규정을 여하의 다른 사법관할에서 무효화시키거나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

14.3 본 일반약관 및/또는 그 성격상 해당 기간 이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후속 합의는, 본 기본 약관 및/또는 후속 합의가 종료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한다.

15. 준거법 및 관할법원

15.1 본 일반약관 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모든 후속 합의 또는 관계는 공급자의 등록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이때 해당 국가의 국제사법 원칙의 적용은 배제된다.

15.2 계약당사자는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공급자의 등록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법원에 전속 관할됨에 합의하고 이 합의는 취소할 수 없다.

15.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혹은 비엔나 협약)의 적용은 배제된다.